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관련: 행정절차법 제46조
2.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.12.22.(금)까지 아래 양식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(부서명, 담당자, 연락처)

| 개정안 | 수정안 | 수정사유 |
|-----|-----|------|
| | | |

*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(www.mafra.go.kr, 국민소통-법령 정보-입법·행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중앙행정기관(19부), 중앙행정기관(4처), 중앙행정기관(19청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 전국 시도 및 시군구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, 축산 관련 단체

주무관 이병길 사무관 한병윤 축산유통팀장 전결 2023. 12. 12. 서정호

협조자

시행 축산유통팀-3472 (2023. 12. 12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 / http:/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2372 팩스번호 044-868-3966 / timetostart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